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도급사업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 구분 지급 의무화 등 〉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27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내용	7

I. 제안경위

2024년 6월 24일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없이 도급계약서 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화를 모든 도급계약으로 확대하고자 함.

아울러 직상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전월(前月)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함)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안 제44조제2항), 도급하는 자가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급한 경우 수급인이 해당 근로자에게 전월(前月)에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며(안 제44조제3항),

임금 지급 내역 확인 결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안 제44조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급인·수급인·근로자에게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44조제5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생략)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가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신설>	
<신설>	

<신 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급인·수급인·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u>제44조</u>,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제11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u>제42조</u>,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제9항, 제76조의3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4. (생략) ③ (생략)	<u>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다.</u> 제109조(벌칙) ① ----- <u>제44조제1항</u>-----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1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u>제42조</u>, 제44조제2항·제3항·제4항----- ----- ----- ----- 3.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2. 검토내용

가. 현행법상 도급사업에서의 임금 지급 관련 규정

현행법상 도급사업에서의 임금 지급에 관한 특례는 「근로기준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은 도급사업에 관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을 위해 건설업의 공사도급¹⁾에 관하여 사용자 외 제3자의 임금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에 따르면,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① 직상(直上) 수급인²⁾(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함)이 하수급인³⁾(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함)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는 경우, ② 확정된 지급명령 등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임금채권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③ 하수급인이 임금채무의 존재를 직상 수급인에게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으로,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함.

2)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수급인의 바로 전 도급인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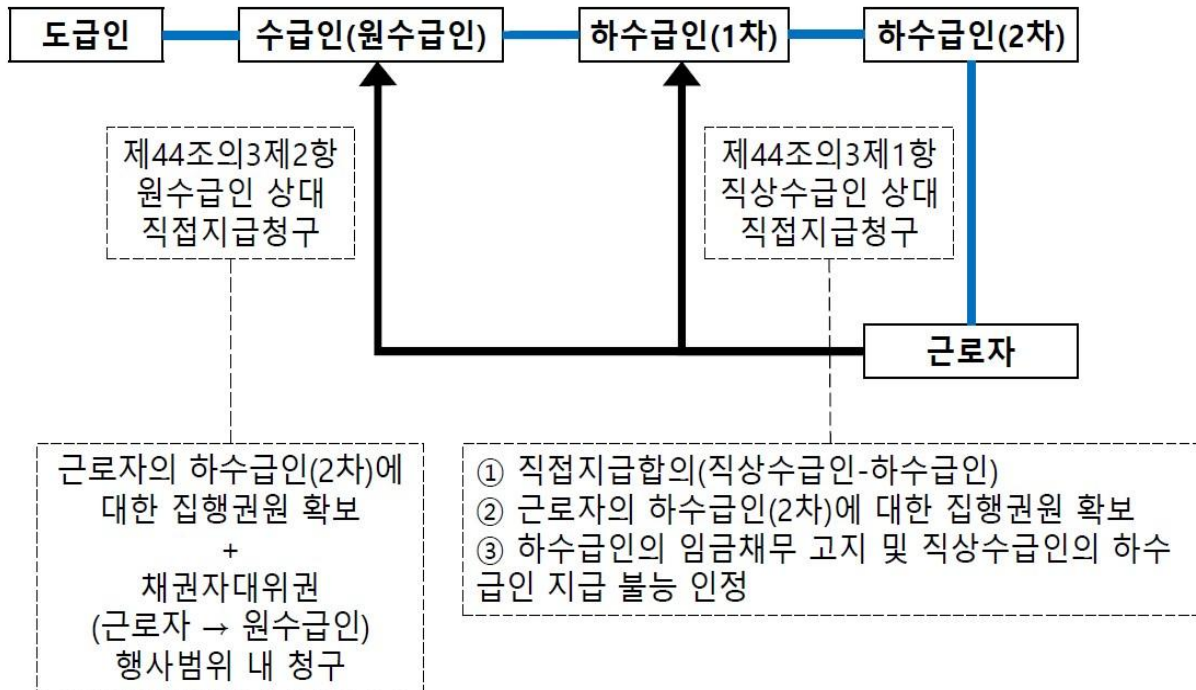
3)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수급인의 수급인을 말함.

고지하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지불 불능에 관한 명백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는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⁴⁾

또한, 건설공사에 관한 원수급인(발주자의 수급인,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첫 수급인을 말함)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원수급인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⁵⁾

-
- 4)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5)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직접 지급의 특례 >



건설근로자법 제7조의36)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7)는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비용을

- 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는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에 건설공사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①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제1항),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제2항), 도급인은 수급인의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제3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8).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등의 방법과 관련하여,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제5조9)는 수급인은 임금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계좌

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8)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같은 항에 따른 도급인(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도급인과 협의하여 정한 날까지 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건설근로자 명부(성명·임금 및 연락처 등이 적힌 것을 말한다)

2. 전월(前月) 임금 지급내역 및 증명자료(임금비용을 최초로 구분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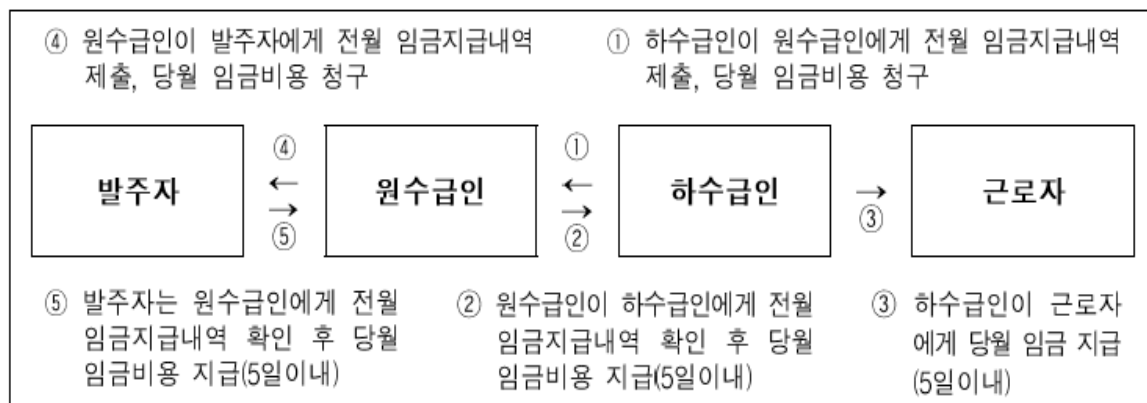
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의 계좌는 해당 임금비용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것이어야 한다.

③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월 임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 미지급 사실 통보서에 실제 임금 지급내역 등 수급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해당 기간 중에 토요일 및 「관공

를 개설하고, 도급인은 해당 계좌에 임금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며, 수급인이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5일 이내에 건설근로자의 계좌로 해당 임금을 이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업무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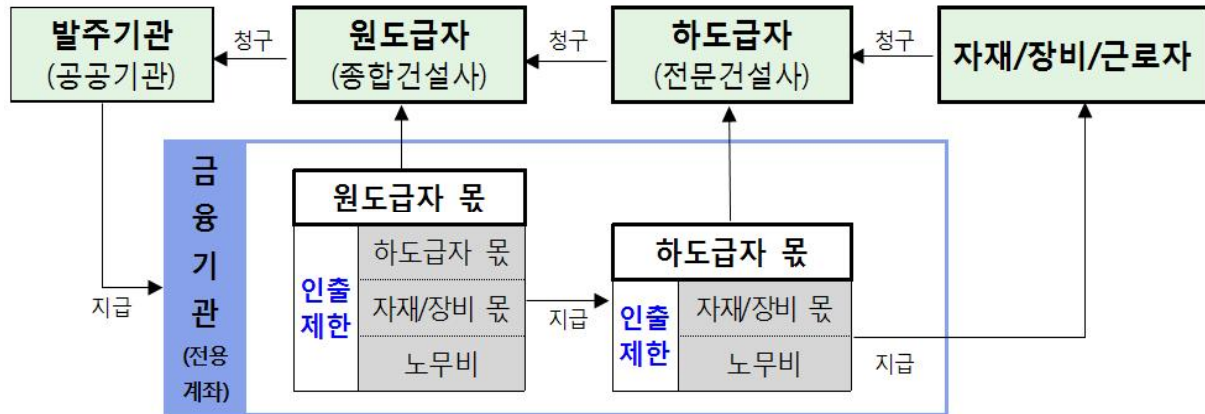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하고, 수령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¹⁰⁾ 이와 같은 전자시스템을 바탕으로 건설근로자법에 따

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있으면 해당 일수만큼 더한 날을 말한다)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지정계좌에서 건설근로자의 계좌로 해당 임금을 이체해야 한다. 다만, 건설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좌 이체 외의 방법으로 임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승인을 받아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0)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전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큰 임금비용의 구분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 개요>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제도를 현행 공공부문에서 도급사업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하도급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채불을 근절하고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두텁게 보호함에 그 의의가 있음.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함으로써 동 제도의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분지급해야 하는 임금비용을 사업비 지급 전에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하수급인이 매월 임금비용을 지급하기 곤란할 수 있음.

도급계약은 계약 체결 시에 보수를 정하는 정액도급뿐만 아니라 개산도급(概算都給)과 같이 계약 체결 시 상·하한액 등 개괄적인 금액만을 결정하거나 작업 진행에 따라 또는 작업 종료 후에 보수를 확정하는 등 보수의 결정시기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임금비용을 사전에 확정하거나 매월 지급하기 어려운 도급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도급계약의 수급자로서는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임금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 지급 및 확인 제도는 그 대상과 범위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

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의 도급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¹¹⁾로 제한되어 있는바, 이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이 전자적으로 가능한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 공공부문의 공사¹²⁾에 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구분지급의 확인 등 도급자의 사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수급자의 임금비용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용이하다고 볼 것임.

개정안은 이를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비용 구분지급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임금비용 등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는 수급자의 입장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도 포함될 소지가 있는 만큼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대상 건설공사) ①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발주자와 원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12)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⑥ 법 제34조제9항 전단에서 “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를 말한다.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공사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

기업으로서는 제출 요구에 응하기 곤란할 소지가 있다고 보임.

셋째,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하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임금에 관한 정보는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소지가 있으므로,¹³⁾ 이를 감안하여 정보 제공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¹⁴⁾

넷째, 개정안은 임금비용 구분지급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유사입법례인 현행 건설근로자법을 고려하여 제재의 정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정부합동 안전 점검)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제66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 제26조(과태료)¹⁵⁾에 따르면, 공공부문 건설공사에서 도급인의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의무 위반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개정안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의무위반 행위의 유형 및 보호법익이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제재의 정도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임금비용 구분지급 제도 도입에 관하여 ①근로관계가 아닌 도급인과 수급인의 도급금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②「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도급계약의 원칙, 대금의 적절지급 등을 이미 규율하고 있어 임금구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도급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임금비용 구분지급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하여는 현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¹⁶⁾ 등 임금구분 지급을 위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16)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급,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임금지급 확인 및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통보의무에 관하여는 도급인에게 새로운 규제(의무)를 부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노무관리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이행력을 담보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사대금 청구·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540